

회 의 록

(2014학년도 제2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 2015. 1. 27.(화) 14:00~15:30

장 소 : 본부 6층 재정관리본부 회의실

참석현황(총11명)

1. 참석자

- 위원(7명) : 위원장 안영진, 재무과장 김현재, 총학생회 정상엽, 총학생회 박현이, 총학생회 김현조, 총학생회(여캠) 장민수, 기성회부회장 전종현
- 간사(2명) : 재무과 오선진, 재정관리과 배태관
- 배석(2명) : 재정관리과 한영석, 재정관리과 김아영

2. 불참자

- 위원(3명) : 교직원위원 백성준, 교직원위원 임철성, 외부전문가 송진희

안 건 : 2015학년도 전남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심의 사항

1. 개회 선언

⇒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 간사로부터 전차 회의록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3.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위원장 : 지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와 아울러 그 이후 학생위원들과 논의된 진행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음.

○ 위원장 : 회의 자료에 의거 '타 대학 등록금 징수 추진 현황' 및 지난주에 개최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합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교직원위원** : 우선적으로 신입생들에게 입학금만 받게 되는 경우에 장학금 감면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 국회 본회의가 2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관련 법이 공포되기까지는 시일이 요구되며 3월부터는 국립대학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업료만 징수할 경우 대학 운영이 마비될 수 있음.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의견은 등록금 고지를 할 때 고지서 상에 총액을 기재하되, 우선은 수업료만 징수하는 것임을 언급하며 학생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학생위원** : 구(舊)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등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며, 아울러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힘.
- **위원장** : 수업료만 우선 징수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예상됨을 설명하며 등록예치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에 구(舊)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함.
- **학생위원** : 구(舊)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면 학생들은 바로 소송에 들어갈 입장임을 표명함.
- **학생위원** : 등록예치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칙으로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 **간사** : 신입생 등록금 고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는 매일 민원 폭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학자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금액만을 고지 할 경우 학부모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일이 급한 신입생 등록금 부분은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함.

- **학생위원** : 총액과 수업료만 우선 징수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명시 하여야 하며, 통합 징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원칙적인 부분이 흐려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설명함. 이 후에 장학이나 대출 부분에 있어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논의 되는 것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생산적인 방향이라 생각됨. 등록예치금이 총장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설명함.
- **간사** : 입학과에서 제기된 문제 사항으로 등록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경우 합격자 등록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며 행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으나 대학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위원장** : 입학금과 수업료만 납부하였을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분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등록예치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도와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함.
- **기성회 부회장** : 현재 이 시점에서 논의할 부분은 구 기성회비에 상당한 금액을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고 징수할 것인지가 쟁점 사항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힘.
- **학생위원** : 구(舊) 기성회비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등록예치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 **학생위원** : 이 자리에서 서둘러 확정하겠다는 것과 자꾸 추후에 논의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등록금 통합 징수 자체가 교육부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 **교직원위원** : 관계되는 모든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미치는 파장에 의해 우리 대학의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도 큼을 설명함.

- **학생위원** : 그러한 파장이나 문제점들을 학생위원이 아닌 교육부나 국회에 주지시켜야 할 것을 주장함.
- **학생위원** : 수업료만 우선 징수하고, 구(舊) 기성회비 상당액을 추가 징수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해당 기관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보를 알려주실 것을 요청함.
- **간사** :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바, 현재 한국장학재단 기본 원칙이 1인 1학기 1번 대출이기 때문에 학생위원들이 내 주신 의견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설명함. 신입생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는 29일 이전까지는 결정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을 안내함.
- **학생위원** : 지난 번 개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은 전년 대비 수업료 및 구(舊) 기성회비 수준으로 동결하되, 등록금의 징수방법은 추후에 국회의 법안 통과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간사** : 지난 번 회의 때는 1월에 재정회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한 상태에서 등록금의 징수방법은 추후에 국회의 법안 통과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어떤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입생 등록금 고지 등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으므로 시급히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함.
- **학생위원** : 혹시라도 2월까지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3월부터 대학의 재정 집행을 중단할 각오를 하고 계신건지 확인 요청함.
- **간사** : 수업료로 징수하였을 경우 국고로 수납되기 때문에 국립대학 운영지원사업이 집행될 여지가 있으나, 등록예치금으로 징수하였을 경우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국회 또는 정부를 압박하여 법률 제정을 촉구할 수 있음.

○ **간사** : 국가의 예산이 대학에서 구(舊)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배정해 준 것인데 구(舊)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3월 학교 운영은 안 될 것이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국고에 수납되지 않으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결과는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위원장** : 현행 분할 납부제도 또한 등록 금액의 균등 분할만 가능하므로 수업료만 우선 납부하고 기타 납부액을 추후 징수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설명함.

(학생위원의 요구에 의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학생위원** : 첫 번째,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금과 구(舊) 기성회비 상당액을 수업료로 통합한 금액을 등록예치금으로 고지하고, 두 번째, 고지할 경우 등록예치금으로 징수하는 이유 및 추후 법안 제정에 따라서 환불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여 안내할 것과 세 번째, 재학생 부분은 추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논의 되어야 함을 요청함.

○ **학생위원** : 추가적으로 현재 상황 및 책임에 대한 부분을 등록금 고지 시 명확히 안내하여 줄 것과 명시할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위원들과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신입생을 대상으로 징수된 등록예치금에 대해서 추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께서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함.

◎ 2014학년도 제2회 전남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금과 구(舊) 기성회비 상당액을 수업료로 통합한 금액을 등록예치금으로 징수하기로 함.
2. 고지 시 등록예치금으로 징수하는 이유 및 추후 법안 제정에 따라서 환불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기로 함.
3. 현재 상황 및 관련 법령 미 제정에 대한 부분을 등록금 고지 시 명확히 안내하며, 명시할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위원들과 논의하기로 함.
4. 신입생을 대상으로 징수된 등록예치금에 대해서는 추후 법안이 통과 되기까지 집행하지 않을 것임.
5.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학생 등록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

2015. 1. 27.

작성자 : 간사(재정관리과) 배 태 관

확인자 : 위원장(재정관리본부) 안 영 진